

2019년도 한국서부발전(주) 장기 체험형 인턴 모집공고

1. 선발개요

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

[단위 : 명]

모집 분야	(직무분야)	사무분야	발전분야				계
	(근무장소)	본사	태안	평택	서인천	군산	
일반		4	18	24	13	8	67
지역인재		6	27	-	-	-	33
계		10	45	24	13	8	100

※ 각 모집분야별 중복지원 불가(직무 및 근무장소 각 1개씩만 선택 가능)

지원자격

구분	주요내용
학력 및 전공	▪제한 없음
연령	▪제한 없음
어학	▪제한 없음
병역	▪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분 ▪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분
채용대상 제외자	▪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에 해당하는 분 ▪당사 체험형 인턴 경험이 있는 분 ▪공고 시작일 기준 취업이 결정된 분

근로조건

구분	주요내용
근로형태	▪ 근무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기간제 근로자
근무기간	▪ `19.9.23(월) ~ `20.2.29(토) - `19.9.23(월) ~ `20.2.14(금) : 직장체험(별도 숙소제공 없음) - `20.2.17(월) ~ `20.2.28(금) : NCS취업역량 강화교육(합숙교육) 및 발전기초 교육(합숙교육) - 발전기초교육은 발전분야 인턴에 한해 시행, 사무분야 인턴은 해당기간 직장체험 시행
근무시간	▪ 주 40시간 통상근무
보수수준	▪ 월 1,800,000원 (4대보험, 식비 및 교통비 포함)
근무장소	▪ 지원서 제출 시 선택한 “본사 또는 해당 사업소”

※ 상기 일정은 회사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

전형방법 및 일정

전형	내용	일정
지원서 접수	▪ 온라인 지원서 접수	`19. 08. 26(월) 13:00 ~ 09. 09(월) 13:00
서류전형	▪ 지원서 평가	`19. 9월 중순
최종 합격자 발표	-	`19. 9월 중순
인턴근무 시작일	-	`19. 09. 23(월)

※ 상기 일정은 회사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

합격자 결정 : 서류전형 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발

2. 우대사항 : 이전 지역인재

대상자 :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

- 충남지역(대전, 세종제외)에 소재한 대학 재학생(휴학생 포함) 또는 졸업자
- 충남지역(대전, 세종제외)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분
 - 단, 충남지역 고등학교를 졸업 후 충남 외 지역 대학을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분은 대상에서 제외

우대방법 : 이전 지역인재의 경우 『이전 지역인재 별도전형』 또는 『일반전형』 중 택1하여 지원 가능

3. 제출서류 (해당 서류는 합격자 발표 후 별도제출)

- 기본증명서, 신원진술서 각 1부
-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(휴학)증명서 1부(이전 지역인재에 한함)
- 학자금 대출/장학금 신청증명서(이전 지역인재 중 고졸자에 한함)

※ 학자금 대출/장학금 신청증명서 제출방법

- 대학학자금 및 장학금 신청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첨부
- 한국장학재단(www.kosaf.go.kr)에서 인터넷 발급(별도 회원가입 필요)
(한국장학재단 > 장학금 > 증명서발급 > 학자금 대출/장학금 신청증명서 발급)
- 제출처는 “한국서부발전”, 발급용도는 “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지원용”으로 명기
 - ※ 충남 소재 고졸학력만 제시하여 합격 후 충남 외 소재 대학 졸업 또는 재학중인 학력이 추후 발견될 경우 합격취소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4. 기타 유의사항

- 각 모집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.
- 본 체험형 인턴 과정은 우리 회사의 채용형 인턴 또는 정규직 채용 등에 별도의 가산점이 없으니, 지원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직장체험 기간은 별도의 숙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.**
- 근무 시작일 부터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.
- 해당분야 책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채용관련 인사청탁자는 『부정청탁금지법』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될 예정이며, 전형단계 및 점수와 관계없이 전형에서 제외됩니다.
- 입사지원서 기재착오,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며,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 위·변조제출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.
-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서부발전(주) 인사운영부 (☎ 041-400-1323,1324) 및 입사지원 홈페이지 Q&A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별첨 : 인사관리규정 제10조

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(破産)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(禁錮)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(禁錮)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(禁錮)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
6. 징계(懲戒)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7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8.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9조(구비서류)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
9.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
10.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(횡령, 배임) 및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1. 형법 제303조(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)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(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2. 『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』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3. 『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』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 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